<table>
<tr><th>위치</th><th>오류유형</th><th>수정 전</th><th>수정 후</th></tr>
<tr><td>57~57p</td><td>문제-본문</td><td>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면세한도</th><th>비 고</th></tr>
<tr><td>술</td><td colspan="3">2병</td><td>2병 합산하여 2리터(L) 이하이고,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.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담배</td><td colspan="2">궐련</td><td>200개비</td><td rowspan="6">두 종류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.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엽궐련</td><td>50개비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전자담배</td><td>궐련형</td><td>200개비</td></tr>
<tr><td>니코틴용액</td><td>20밀리리터(mL)</td></tr>
<tr><td>기타유형</td><td>110그램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그 밖의 담배</td><td>250그램</td></tr>
<tr><td>향수</td><td colspan="3">100밀리리터(mL)</td><td>-</td></tr>
</table>
</td><td>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면세한도</th><th>비 고</th></tr>
<tr><td>술</td><td colspan="3">용량은 2리터(L) 이하,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.</td><td>-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담배</td><td colspan="2">궐련</td><td>200개비</td><td rowspan="6">둘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.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엽궐련</td><td>50개비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전자담배</td><td>궐련형</td><td>200개비</td></tr>
<tr><td>니코틴용액</td><td>20밀리리터(mL)</td></tr>
<tr><td>기타유형</td><td>110그램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그 밖의 담배</td><td>250그램</td></tr>
<tr><td>향수</td><td colspan="3">100밀리리터(mL)</td><td>-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333~333p</td><td>문제-본문</td><td>(2) 구매자 및 구매총액(「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29조
④ 입국장면세점에서는 입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, 입국인에게 미화 800달러 이하의 구매한도 범위 내에서 물품을 판매해야 한다. 이 경우 술·담배·향수는 여행자 휴대품 등의 면세 규정에 따른 별도 면세범위 내(술 : 2병 합산하여 2리터 이하·400달러 이하, 향수 : 100밀리리터)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. 구매자에게 입국인도장에서 인도할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.</td><td>(2) 구매자 및 구매총액(「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29조
④ 입국장면세점에서는 입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, 입국인에게 미화 800달러 이하의 구매한도 범위 내에서 물품을 판매해야 한다. 이 경우 술·담배·향수는 여행자 휴대품 등의 면세 규정에 따른 별도 면세범위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.
구매자에게 입국인도장에서 인도할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.</td></tr>
</table>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